## 43. 건설업 조경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 견관절염, 부분 강 직 반사성 교갂신경이영양증

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건설업 업무관련성 높음

- 1. 개요: 근로자 김 ○ 는 2004년 5월 19일 3시간 동안 chlorpyrifos 계열의 살충제인 더스반을 분무하면서 노출되었고, 한달 후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으로 진단받았다.
- 2. 작업환경: 근로자는 2004년 4월 25일 입사하여 나무심기, 석축 쌓기 등 아파트 내 일 반적인 조경작업을 하였다. 2004년 5월 19일 아파트 단지의 솔나무에 살충제(더스반 수화제와 식목영양제의 혼합) 살포작업 중 농약을 직접 살포하지는 않고 차량 적재함에 동력 살수기로 개폐작업을 하였다. 살수 작업시 차량에 남아 있는 호스의 일부분이 2-3 cm 정도 찢어져 있어 근로자는 찢어진 부분을 고무타이어로 싸매어 압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, 이 때 찢어진 호스에서 고압으로 살충제가 방출되어 농약에 전신이 노출되어 작업 완료시에는 전신이 농약으로 완전히 젖은 상태로 약 3시간 가량 있었다고 하였다. 작업 중 호흡기 마스크나 보호의 또는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.
- 3. 의학적 소견: 2004년 8월 9일 내원시 주요 호소 증상은 우측 상지에서 수부, 수지부에 이르기까지 통증, 작열감, 피부변색, 견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였다. 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상지에서 수부, 수지부까지 피부변색과 전반적 근 긴장도의 감소, 견 관절 운동범위 제한, 우측 상지의 여러 근육에서의 불수의적 섬유속성 근 위축 양성, 우측 견 관절 주위근육 및 상지근육에서의 근 위축 양성, 우측 삼두건 및 이두건 근육 신장반사소견이 있었다. 근전도 전기진단검사 소견은 정상이었다. 검사 결과 우측 견 관절 부분강직, 말초신경병증,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상태로 진단되었다.
- **4. 결론:** 근로자 김〇〇은.
- ① 유기인계 농약인 chlorpyrifos 계열 살충제인 더스반을 취급한 후 양측 견관절염과 부분 강직 및 반사성 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진단되었는데,
- ② 작업 중 수시간 동안 더스반 용액에 피부가 접촉되었고, 분무된 살충제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③ 유기인계 농약 및 chlorpyrifos는 지연성 말초 신경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며, 유기인계 농약의 경우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,
- ④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다른 요인들이 없었으므로.

작업 중 노출된 더스반이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및 양측 견 관절염과 부분강직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.